

제 174회 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와 '역사문제'

가연자 : 하타노 스미오 (아시아 역사자료센터 센터장)

일본 아시아 역사자료 센터의 센터장 하타노 스미오의 강의가 6월 10일 인문대 신양인문학술정보관 302호에서, 서울대 역사연구소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타노 선생은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의 전개를 1951년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한 '강화조약체제'의 변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하타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같은 1951년에 체결된 미일안보조약과 맞물려, 군사동맹과 일체화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 한국과 같은 근린제국과는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영미 등 주요 연합국이 패전국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방기했다는 점, 전쟁의 종결과 식민지 문제의 처리가 일체화되어 있었다는 특징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전범재판에 대한 해석이 베르사유 조약이나 이탈리아의 강화조약에 비해 불명확하게 이루어져, 이후 일본 내외에서의 관련된 해석에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도 역시 거론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 정치경제적 '안정된 질서'의 확립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가장 우선적인 지향점이었으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전쟁/식민지 지배에 기인하는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봉인'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역사교과서의 검정,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이 한국, 중국의 반발로 외교문제화하고, 일본 국내에서도 시베리아 송환자, 재외재산 상실자 등 일본인 전쟁피해자가 보상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들 문제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봉인하는 형태의 대응을 취했으며, 이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해석이 대응의 중요한 근거였기에,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강화조약체제'가 정착한 시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가 되면 냉전의 종결이라는 국제적 요인과 자민당 일당지배체제의 붕괴라는 국내적 요인이 맞물려 '강화조약체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욱 활발해진다. 종군위안부 문제, 강제연행/강제노동문제, 731부대 문제 등 이른바 '전후보상문제'가 큰 쟁점이 된 것이다. 특히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당사국이 아닌, '강화조약체제' 형성의 주체가 아닌 한국/중국으로부터 '강화조약체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화한 것이다. 여기서 특히 쟁점이 된 것은 위안부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는 위의 문제들이 '해결완료'되었다는, 즉 '강화조약체제'를 수호하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 입장을 유지하며 도의적인 관점으로부터 해결책을 모색하며 1994년 이후 무라야마 내각에서 '평화우호교류계획'이 구상되어 아시아 역사자료센터 설립, 아시아 여성기금 등 새로운 '역사화해정책'이 실행된다. 특히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 여성기금은 법적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국가의 직접적인 보상은 불가능하지만 책임을 국가와 국민이 나누어서 지자는 취지에서 입안된 정책이었으나, 특히 한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일본정부가 '국가책임'을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정책으로서 해석되어버리는 등 기대한 효과를 거두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의 명확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려는 데 소극적인 것은 미나마타 병 문제 등 여타 사안에서도 보이는 것이고, 일본인 전쟁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즉 위안부 문제 하나만 바라볼 수 없는 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하지만 2007년 최고재판소의 중국인 보상문제에 대한 판결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의

모든 대외조약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한일협정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보이듯이, 전후처리의 법적 틀로서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는 전쟁배상을 주요 문제로 상정하여, 식민지 문제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한일국교정상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일교섭은 1951-1965년에 걸쳐 이뤄졌다. 교섭 당초 한국은 연합국/전승국의 일원으로서, 피해보상의 수량을 극대화하려 하였으나, 한국이 최종적으로 연합국/전승국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교섭의 초점은 청구권문제와 경제협력 문제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한일협정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나 그 청산 등의 문제를 회피하며 체결되었고, 경제협력관계 구축이 중요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일협정을 평가할 때 식민지 청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관점도 적절하지는 않으며, 어떻게든 '화해'를 성립시키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라는 면도 일정하게 인정, 평가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강연자의 의견이었다.

질의응답

질문 : 독도 귀속문제의 판단을 비롯하여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국과 한일관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자체는 이 조약에 관여치 않았다. 이 강화조약체제와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답변 : 물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국, 한일협정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사실상 한국에 전승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민지 시기 재조선 일본인과 일본기업이 남긴 한국내의 자산을 접수할 권리는 한국측에 돌아갔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전승국이 향유했던 권리이기도 하다.

질문 : 역사학 속에서 '증거'라는 개념의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 1992-93년 당시 일본정부의 위안부 문제 조사팀이 처음 찾으려 한 것은 일본측의 문서자료이다. 그러나 마땅한 문서자료는 발견되지 않았고, 한국 측에서의 청취조사를 주요 근거로 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이 고노 담화이다. 즉 정부의 원래 입장은, 역시 문서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역사학의 입장에서는 문서자료 이외에도 청취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 강제징용 등 여타 역사문제에 비해 위안부 문제의 경우는 특히 불완전한 처리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답변 : 예상했던 질문이다. 위안부 문제는 국제적인 '인권문제'로서 다루어져 유엔인권위원회의 의제로까지 올라가게 되고, 유엔으로부터 일본 정부측에 보상문제에 나서라는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는 윤리, 인권의 문제가 중요시되는 최근 20년래의 국제정치의 조류에 대해 일본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라는 좀더 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유엔의 권고는 응할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기에, 이 권고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다른 문제(731부대, 강제연행 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생각하는 듯하다. 내년으로 다가오는 종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차원에

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방침을 더욱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애초에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문제 평가 자체가 매우 불완전, 애매한 것이었다. 위의 문제와의 관련에서, 역시 무라야마 담화를 대체할 새로운 담화를 종전 70주년을 기하여 발표하여,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총괄'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자세를 표명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불명확하다. 일본정부가 위의 사항들을 감안하여, 새로운 담화의 발표를 통해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한국, 중국 등의 의구심까지 불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